#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용혜인·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44 발의연월일 : 2024. 12. 26.

발 의 자:이재강・용혜인・이성권

장종태・양문석・윤종군

김 윤 • 박해철 • 이훈기

김문수 · 김태년 · 김우영

정혜경 • 주철현 • 박지원

김성회・김 현・박용갑

복기왕 · 김준형 · 한준호

이광희 · 한정애 의원

(23인)

## 제안이유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년간 현재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서 소위 부랑아 일소 및 갱생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 선감학원이 국가의 공권력 하에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 청소년을 강제 감금하고, 이들에게 극심한 노역과 폭력, 굶주림과 고문의 고통을 겪게한 참혹한 사례임.

선감학원 폐쇄 이후 여러 차례 인권 유린 실태가 드러났으나, 국가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구제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었음. 이

후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결정하고 국가와 경기도의 공식사과, 특별법 제정, 진실규명활동의 제도화, 인권침해 피 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한 상황임. 한편, 2024년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음.

이에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 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 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 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 다. 피해자와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은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조사개시결정을 할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4조).

-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실지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동행명령 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 마. 위원회는 피해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을 조사 및 발굴할 수 있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 바.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진 상규명 활동을 종료하되, 1년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안 제20조).
- 사. 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하고,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5조).
- 아.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안 제30조).
- 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 금을 지급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인하여 악화 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 를 제공하는 선감학원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46조 및 제47조).

-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 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 또는 추모행사 거행,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48조).
- 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감정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4조).

##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경기도 안산시의 선감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강제 수용 및 각종 인권 유린이 자행 되었던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 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에 태평양 전쟁의 전사(戰士) 확보를 명분으로 선감학원을 설치한 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강제 수용하여 강제노역, 폭행, 학 대 및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 나. 광복 이후 선감학원이 1946년에 경기도로 이관되어 1982년에 폐쇄되기 전까지 아동·청소년을 강제 수용하여 강제노역, 폭행, 학대 및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 2. "피해자"란 선감학원에 수용되었다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선감학원사건의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 해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피해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조(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① 선감학원 인권 유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며,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 및 조사
  - 2.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3. 피해자 및 유족 여부의 심의 결정

- 4. 제16조의 피해자 유해 조사 발굴
- 5. 제21조의 진상규명결정, 제22조의 진상규명불능결정
- 6. 제24조의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 7. 제25조의 피해자 직권 결정
- 8. 제31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 9. 제32조의 위로금 및 보상금, 제33조의 의료지원금, 제34조의 생활 지원금 심의·결정 및 지급
- 10.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 2. 피해자 및 유족 단체가 추천한 사람
  - 3. 진상규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 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의 당원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4.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

우자였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 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조사대상자 및 진상규명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 등의 회의)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11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및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위촉되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 및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신청의 방식) ① 제11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신청의 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
  -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 제14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3조제1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과 관련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관해서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5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

-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3.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 4.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 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4호의 사실조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등에 주민 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 ⑧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통보·제출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7항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6조(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유해 수습, 현장 감식 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 ·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무연분묘에 피해자

- 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피해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피해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피해자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유전자검사)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과 관련하여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9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대상자의 성명·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및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 3. 동행할 장소
- 4.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 5.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 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 ③ 동행명령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에게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 제19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 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개시결정을 최초로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활동기간 이내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 및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 제2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 제2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였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각하결정, 제14 조의 조사개시결정, 제21조의 진상규명결정, 제22조의 진상규명불능

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1조의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 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20조의 활동기간이 종 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진상규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위원회의 피해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제16조의 유해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8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 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제24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 제4장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

- 제30조(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

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제32조(위로금 및 보상금) ① 국가는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선감학원 수용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피해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 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로금 또는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위로금 또는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피해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⑤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를 갖는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33조(의료지원금) 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피해 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 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간호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 꺼번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 ③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본인이 이미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다.
  -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제32조의 위로금 또는 보상금, 제33조의 의료지원금, 제34조의 생활지원금(이

- 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 제37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재심의) ① 제36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 자 또는 유족은 제37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 다.

- 제39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 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41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 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43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국가가 제1항의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4조(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제5장 피해자 및 유족 치유 지원 등

- 제45조(피해 치유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6조(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인하여 악 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 를 제공하는 선감학원 인권유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 다.
  - 1. 기념 또는 추모행사의 거행
  - 2. 아동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관 건립
  - 3. 선감학원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 시
  - 4. 선감 평화공원 조성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념 관련 사업
  - ②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9조(불이익 처우 등 금지) 이 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결 정된 자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 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6장 보칙

- 제50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제3조제2항의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 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52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7장 벌칙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통보·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 2. 제5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
-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거짓으로 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

람

- 3.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 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 피하거나 방해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4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의 행정청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위촉 및 위원회 사무국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ㆍ위촉

되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